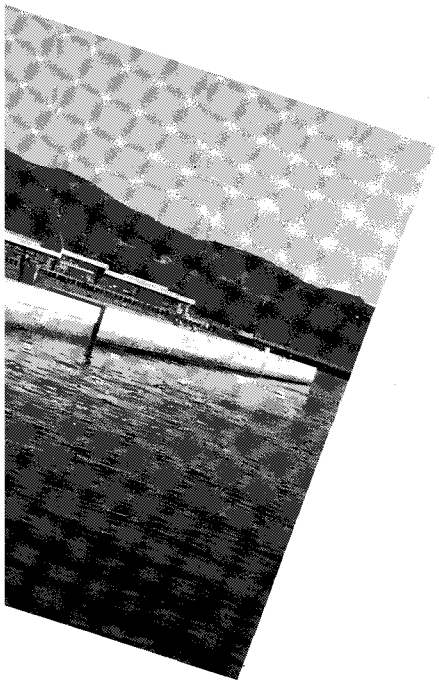

日本漁港의 維持管理 ⑦

# 漁港施設의 處分

## 1. 어떠한 제한이 있는가

어항의 구역안에서는 어항기능을 보전하고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의 행위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어항법 제37조에 의하는 경우와 적정화법 제22조에 의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는데, 어항법의 경우는 어항의 공공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는 것이며 이 경우 공공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것은 물론 단독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어항시설 등도 모두 포함하여 어항시설 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용제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적정화법의 경우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교부와 사용을 목적으로 일정의 처분에 있어서 각성(各省) 각청(各廳)의 장(어항관계 사업에 있어서는 농림수산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는 국가보조금 등의 교부를 받아서 취득하였거나 또한 효용이 증가한 재산의 처분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 2. 허가는 누가 받는가

### 가. 어항법 관계

어항법 제37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자는 당해 어항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다. 통상사유의 시설에 있어서는 소유자와 처분행위를 행할 자가 동일의 경우가 대부분이나, 어항시설과 같이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어항관리자라 할지라도 이용자인 어협 등이 어항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의 설치와 점용 등을 행할 경우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어항시설의 형질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안벽에 쇄빙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안벽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어항관리자가 점용을 허가하기 전에 이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물론 당해 어항시설의 소유자인 어항관리자가 스스로 형질 변경 등의 처분을 행할 경우에 있어서는 행위자와 허가를 받을자가 동일인이 되나 행위자가 아니고 시설의 소유자 등이 허가를 받는 점이 통상의 행위제한과 약간 상이하다.

### 나. 적정화법 관계

적정화법 제22조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자는 국고보조사업에 의해서 보조금 등의 교부를 받아서 시설이나 용지를 조성한 보조사업자(지방공공단체)이다.

이 경우 어항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아니고 보조사업자임을 주의하여야 된다. 통상 어항시설의 소유자와 보조사업자는 동일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어협이 안벽에 쇄빙탑을 설치하는 경우 그 안벽을 市町村이 국고보조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경우에는 안벽을 보조의 목적에 반하여 특정의 자에게 특정의 목적으로 사용케 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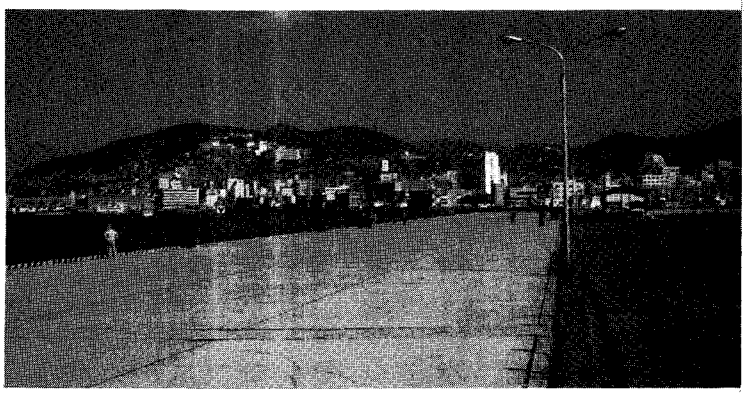

에 적정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성청(各省廳)의 장(농림수산대신)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 승인을 받는 자는 보조사업자인 市町村이고 쇄빙탑을 설치하는 어협이 아니다.

市町村은 이 승인을 받은 뒤에는 어협에 대하여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의 "가"의 경우 안벽이 국고보조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경우에는 어항법과 적정화법의 쌍방 허가와 승인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다.

## 3. 처분제한을 받는 시설

어항법 제37조의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항법 제3조에 규정한 어항시설이다. 어항의 구역내에서는 공공의 어항시설외에 공공적 단체로 볼 수 있는 어협이 소유하는 공공시설에 준하는 시설, 사인이 소유하는 시설 등으로 어항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

또 공공어항시설에 있어서도 국가보조를 받아 조성된 시설, 지방공공단체의 단독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시설 등이 있으나 어항법 제37조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관계없이 어항시설의 전부가 대상이 된다. 다만 사유시설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항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예는 적기 때문에 사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적정화법 제22조의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보조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시설에 한하고 지방공공단체의 단독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더욱 어항관계 국고보조사업 이외의 타국고보조사업(예, 연안어업구조 개선사업 등)에 의해서 조성된 시설(어항시설도 포함)의 처분에 있어서는 적정화법 제22조에 의한 승인권자는 각 성청(省廳)의 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항관계 보조사업에 의한 승인권자(농림수산대신)와 동일하나 승인신청을 취급하는 담당부국은 틀린다.

어항관련도정비사업(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신설된 어항관련도를 도로관리자에 양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 적정화법 제22조의 승인을 필요치 않는다. 이것은 어항관련도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에 채택하는 경우의 조건으로서

미리 都道府縣 또는 市町村의 도로로 인정하고 완성 후에는 도로관리자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도로관리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이득을 발생케 하는 경우에는 국가 보조금의 일부를 반환할 필요가 생긴다.

## 4. 제한을 받는 처분이란

어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 처분으로서는 "어항시설의 형질 또는 소재장소의 변경, 임대, 수거, 기타 어항의 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처분"이 대상이 된다.

더욱이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서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의 보전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않고 상기의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새로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당해 위반자에 부담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적정화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는 처분으로서는 "보조사업 등에 의해서 조성한 재산(시설)을 보조금 등의 교부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고 양도, 대부, 교환 또는 담보제공하는" 등의 처분이 대상이 된다.

이상과 같이 두 가지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의 설치경위나 처분의 방법에 의해서 어항법의 허가와 적정화법의 승인양자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안벽에 쇄빙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벽의 형상 등을 일부변경하게 됨으로 어항법 제37조에 의한 형질의 변경허가와 새로 안벽을 보조조건과 틀리는 특정의 자가 점용하여 급빙이라는 특정의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적정화법 제22조에 의한 승인과 쌍방의 수속이 필요하다.

아울러 어항은 그 구역내의 수역과 육역에 있는 각종시설이 상호관련하여 일체로서 기능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어항전체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5. 허가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가. 어항법 관계

어항법 제37조에 의한 어항시설의 처분제한은 어항의 기능보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를 필요치 않는다.

(1) 어항수축계획에 의해서 하는 처분

어항법 제19조 또는 제19조의 2 어항수축계획에 의한 어항시설의 형질변경, 수거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어항의 기능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또 별도 어항법의 규정에 의해서 농림수산대신의 시행의 허가를 받게 되므로 중복처분의 허가를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어항개수사업 또는 어항국부개량사업 등에 의해서 어항시설의 처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업이 어항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법률상 기능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않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2) 어항관리규정을 근거로 한 처분

어항관리규정에 의해서 어항시설을 처분하는 것은 어항관리자가 유지운영계획을 근거로해서 어항시설의 유지관리행위를 행하는 것과 어항관리자의 감독처분 등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처분은 어항의 적정한 유지관리상 필요한 행위이며 또 어항법의 규정에 의해서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은 어항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서 허가를 필요치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기타

어항법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필요치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상과 같은 것이나 이외 당연 처분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어항지정의 취소 또는 어항구역의 변경에 수반되는 어항시설의 처분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종래 어항의 구역내의 어항시설이었으나 지정의 취소구역의 변경에 의한 어항의 구역외로 된 경우, 어항법상의 어항시설이 안된다. 이것은 어항법의 주무대신인 농림수산대신이 그 어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항으로서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하는 것으로 개개의 시설소유자 등의 의사에 의해서 처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나. 적정화법 관계

적정화법 제22조에 의한 처분제한은 보조금 등 교부의 본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보조금 등의 교부목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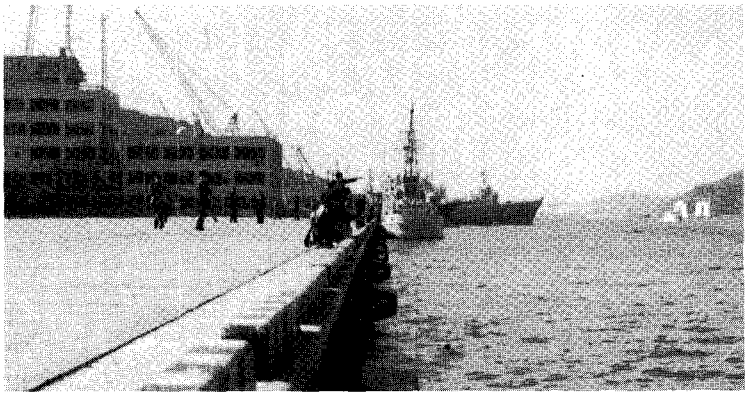

반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교부목적에 반하는 처분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

첫째 "각 성청(省廳)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이다. 더욱이 이 승인도 행정행위이므로 교부결정의 경우와 같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와 같이 조건을 붙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어항에 있어서 배후에 현도(縣道)를 통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에 의해서 조성한 어항시설(야적장, 선양장 등)의 일부를 처분할 필요가 생긴 경우 통상은 대체시설을 원인자에게 설치 혹은 부담을 시키나 타에 대체시설을 하는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는 보조금의 일부반환을 조건으로 처분이 승인되는 것이다.

둘째는 정령(政令)에서 정한 경우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적정화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있다.

1)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사업 완료에 따라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한다는 것은 교부결정 조건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 경우이다.

2) 각 성청(省廳)의 장이 정한 내용년수를 경과한 경우이다. 더욱이 2)의 내용년수에 있어서는 어항시설에 있어 공공시설로서 항구적으로 이용되고 이용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확장이 진행되어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며 일정기간을 지나면 보조사업자 등의 판단으로 시설의 처분이 되는 것은 시설의 성격으로 보아 적당치 않으므로 현재는 정해놓고 있지 않다.

## 다. 어항법 제37조 및 적정화법 제22조의 규정운용에 대하여

어항시설의 처분에 있어서는 어항법 제37조에 의해서 또 보조사업에 의해서 취득 또는 효용이 증가된 재산에 있어서는 적정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각 제한되어 있으나 사무간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미한 처분으로서 본래의 용도 또는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하는 것과, 또 어항의 기능에 지장을 생기게 할 우려가 없는 것 혹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어항시설 등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경우에는 어항법 또는 적정화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제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규모나 설치장소 등에 따라 취급이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담당부국과 미리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1) 대상자(처분을 하는 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어업생산조합과 신용어련을 제외함)

(2) 처분의 내용

전선류의 가설, 전주류, 가로전주, 급수전, 소화전, 표지판, 입간판, 신호기, 우편포스터, 전화박스 설치, 수도관, 양배수관, 가스관 전선류의 매설

(3) 설치시설의 규모 등

설치를 하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기준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

(가) 공작물류, 전주류—지상 지하를 불문하고 점용면적이 1개에 대하여 2㎡를 넘지 않는 것

(나) 매설하는 선관류(線管類)—구경(口徑)이 30㎝를 넘지 않는 것

(다) 가설(架設)할 전선류—지상 4.5m 이상의 것

(라) 간판류—표시면적이 5㎡를 넘지 않는 것

더욱이 이러한 것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항시설의 형질을 현저히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서 안전한 것이라야 하며 또 외곽과 계류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매설 또는 상공가설(上空架設)을 하도록 되어있다.